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년월일 : 2005. 11. 1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4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마. 공무원의 범위(제30조 신설)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구청장 방침 746(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계획, 2005.10.13.)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05.10.20. ~ 2005.11.08.)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5장 정치운동 중 제30조 내지 제31조를 제31조 내지 제32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 3] 결혼란 중 자녀 일수 “1”을 “0”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일수 “1”을 “0”으로 한다.

회갑란 중 본인 및 배우자 일수 “5”를 “0”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일수 “1”을 “0”으로 한다.

사망란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일수 “7”을 “5”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일수 “5”를 “2”로 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일수 “3”을 “2”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수 “3”을 “0”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수 “3”을 “0”으로 한다.

탈상란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일수 “2”를 “0”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증조부모 일수 “1”을 “0”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수 “1”을 “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u>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u>  <u>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u></p>	<p><u>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u>  <u>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u>  <u>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u></p>
<p><u>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5조 (-----공휴일 등 근무) ①구-----민원편의 등-----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          -----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u></p>
<p><u>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p>&lt;삭제&gt;</p>
<p>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생략)</p> <p>&lt;신설&gt;</p>	<p>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현행과 같음)</p> <p>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24조 (특별휴가) ①~②(생략)</p> <p>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제24조 (특별휴가)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⑤(생략)</p> <p>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p> <p>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p> <p>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p>	<p>④~⑤(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p> <p>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p> <p>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제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⑨(생략)</p> <p>제25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⑨(현행과 같음)</p> <p>제25조 (휴가기간중의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u>토요일 또는 공휴일</u>-----</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5장 정치운동</p> <p><u>&lt;신설&gt;</u></p> <p>제30조 (정치적 행위) (생략)</p> <p>제31조 (시행규칙) (생략)</p>	<p>제5장 정치운동</p> <p>제30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의회 의원</li> <li>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li> </ol> <p>제31조 (정치적 행위) (현행 제30조와 같음)</p> <p>제32조 (시행규칙) (현행 제31조와 같음)</p>



## [별표 3]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비 고
		현행	개정	
결 혼	본인	7	7	
	자녀	1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0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0	
출 산	배우자	3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5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0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0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0	